

의안번호	제 80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
----------	----

제출연월일 : 2018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내용 반영, 우리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정비

2. 주요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목적(안 제1조)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안 제2조)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규정 (안 제7조)
→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변경 (안 제9조)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경보 실시'구분(안 제17조, 안 제18조)
-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별표3]
→ 자연재난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별표 4]의 가동 기준에 지진·화산 분야 추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대책본부”라 한다)의 장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도지사
2. 차장: 행정부지사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다만, 해당 실·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충청북도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충청북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 별표 6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과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국장
2. 해당 재난 관련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의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

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대책본부”라 한다)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 ·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 난상황관 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p>상황분석 평가팀</p>	<p>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p>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p>가) 재해구호기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p>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p>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및 시·군 복구현황 파악</p>
	3) 긴급통신 지원반	<p>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및 시·군 복구현황 파악</p>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및 시·군 복구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및 시·군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p>가. 상황관리 총괄반</p>	<p>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대책본부장 및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p> <p>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사고수습본부, 시·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p>
<p>나. 협업기능반</p>	<p>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p> <p style="text-align: center;">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p>
<p>다. 재난대응협업반</p>	<p>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p>
<p>라. 현장지원반</p>	<p>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p>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충청북도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청년정책담당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마.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국제통상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사회재난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정책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도 청사) 사고 나.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다.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라. 지진 마. 화산 바. 낙뢰 사. 가뭄 아.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우리 도 ‘오창 신도시’ 해당	회계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균형발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다.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산업과 관광항공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동물방역과 유기농산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에너지과 에너지과 에너지과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과 에너지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기후대기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일자리정책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균형발전과 교통정책과 자연재난과 도로과 수질관리과 교통정책과 관광항공과 관광항공과 건축문화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기업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에너지과 에너지과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유산정책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복지과 산림복지과
19. 소방청	가. 화재 나. 위험물사고 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본부 소방본부 소방본부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괄 조정 관	차장	본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운영지원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 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다. 지진(해일)·화산 시 : 규모4.0 ~ 4.9(대책본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5+a명	
	반 장	담당관(1)	
	1)상황관리 총괄반 (4+a)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4+a)	· 재난상황관리반(4) - 재난안전상황실(2) - 자연재난 총괄부서(2) - 재난수습 주관부서(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지원반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정책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각 재난수습 주관부서 도로과, 유기농산과, 축수산과, 자연재난과, 문화예술산업과, 건축문화과, 체육진흥과, 관광 항공과, 수질관리과, 투자유치과, 산림녹지과, 균형발전과
	2)협업 기능반(a)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사회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관광항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충북지방경찰청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본부	

※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화산 시: 규모 5.0이상 (국지적인 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9+a+β명	
	반 장	담당관(1)	
	1)상황관리 총괄반 (8+a)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a)	· 재난상황관리반(5) - 재난안전상황실(2) - 자연재난 총괄부서(2) - 재난수습 주관부서(a) - 안전정책과(1)
		나) 상황보고서작성팀 (1+a)	· 자연재난 총괄부서(1) · 재난수습 주관부서(a)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1+a)	· 자연재난 총괄부서(1) · 재난수습 주관부서(a)
		라) 행정지원팀(1+a)	· 총무과(1+a)
	2)협업 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정책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각 재난수습 주관부서 도로과, 유기농산과, 축수산과, 자연재난과, 문화예술산업과, 건축문화과, 체육진흥과, 관광 항공과, 수질관리과, 투자유치과, 산림녹지과, 균형발전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사회재난과
		야)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관광항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충북지방경찰청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청주기상지청, 충북지방경찰청, 육 군제5019부대, 한국농어촌공사 충 북본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은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충 북본부 등

※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 다. 지진(해일)·화산 시 : 규모 5.0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2+a+β명	
	반 장	담당관(1)	
	1)상 황 관 리 총괄반 (11+a)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7+a)	· 재난상황관리반(7) - 재난안전상황실(2) - 자연재난 총괄부서(2) - 재난수습 주관부서(2+a) - 안전정책과(1)
		나) 상황보고서작성팀 (1+a)	· 자연재난 총괄부서(1) · 재난수습 주관부서(a)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2+a)	· 자연재난 총괄부서(2) · 재난수습 주관부서(a)
		라) 행정지원팀(1+a)	· 총무과(1+a)
	2)협업 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정책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각 재난수습 주관부서 도로과, 유기농산과, 축수산과, 자연재난과, 문화예술산업과, 건축문화과, 체육진흥과, 관광항공과, 수질관리과, 투자유치과, 산림녹지과, 균형발전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사회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관광항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충북지방경찰청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본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청주시상지청, 충북지방경찰청, 육군제5019부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등

※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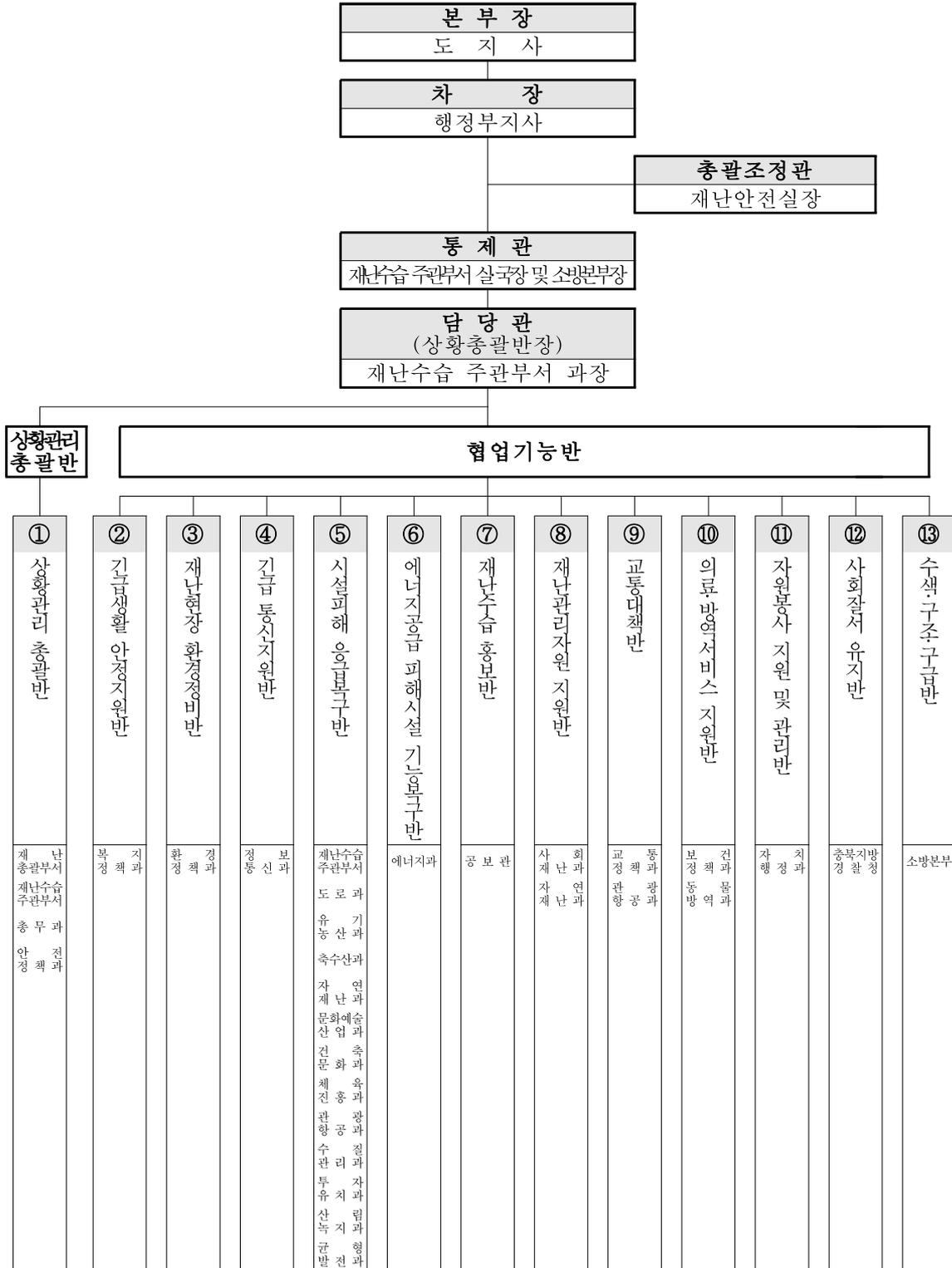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2+α+β+γ명	
	반 장	담당관(1)	
	1)상황관리 총괄반 (11명)	가) 상황관리총괄팀(5명)	· 재난안전상황실(2) · 사회재난 총괄부서(1) · 재난수습 주관부서(2)
		나) 수습상황파악팀(5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2)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안전정책과(1)
		다) 행정지원팀(1+α)	· 총무과(1+α)
	2)협업 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정책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자연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관광항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동물방역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충북지방경찰청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본부		
재난대응협업반(β)		· 충북지방경찰청, 육군제5019부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 안전공사충북본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과건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 근무방법

-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 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 상황관리총괄반·협업기능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안전처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